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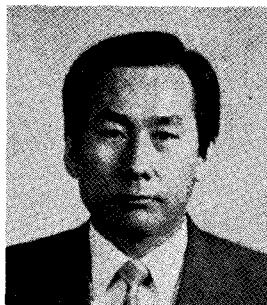
I. 머리말

우리는 흔히 產業財產權 (Industrial Property) 分野만큼 國際的으로 統一化된 分野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產業財產權 保護를 위한 파리協約 (Paris Convention)은 各 締約國 (Contracting Parties)에서 遵守해야할 몇가지 主要原則만을 規定하고 있을 뿐 出願과 登錄要件 등 制度의 運營에 관한 것은 各國의 國內立法에 委任하고 있어서 (파리協約 第6條 등) 各國間에 상당한 差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制度의 差異로 因하여 外國人の 國內出願 및 內國人の 海外出願에 不便이 많을 뿐 아니라 商標保護 水準도 未洽하다는 批判이 일고 있는 가운데 美國·EC 등 先進國들을 中心으로 이를 多者間 國際條約에서 直接 規定함으로써 各國 國內立法에의 反映 義務化를 통한 凡世界的으로 商標制度의 統一化 (Harmonization) 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특히 偽造商品貿易 (Trade in Counterfeit Goods) 과 관련한 產業財產權 紛爭時 이를 도맡아 處理할 수 있는 機能을 WIPO (세계 知的財產權 機構) 内에 마련하지 아니하고 그 紛爭當事國間의 交涉에 의하여 解決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境遇 國際司法裁判所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提訴할 수 있음에 그치게 한 것은 (파리協約 第28條) 오늘날 產業技術의 發達과 貿易의 增大로 因한 產業財產權 紛爭이 날로 增加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에 對處하는 機能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관한 紛爭 解決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内에 그 解決機構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 우루과이 라운드 TRIPS 協商그룹 (Negotiation Group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서 知的財產權 保護問題가 議題로 採擇되어 지금 그 마무리 段階에 와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產業財產權 專擔 國際機構는 어디까지나 WIPO이기 때문에 GATT 주관하의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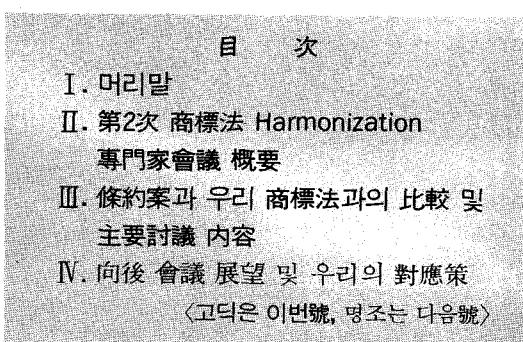
WIPO 商標法 HARMON - IZATION 論議에 관하여



李 佑 權
(特許廳 審查官)

目 次

- I. 머리말
- II. 第2次 商標法 Harmonization
専門家會議 概要
- III. 條約案과 우리 商標法과의 比較 및
主要討議 内容
- IV. 向後 會議 展望 및 우리의 對應策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다음號〉



루과이 라운드도 WIPO와의 긴밀한 協調下에相互補完關係를 維持하는 線에서妥結될 것으로展望되며, WIPO는 이러한 雾圍氣와 움직임에 자극받아 파리協約 제19조에서 규정한 特別協定形態의 商標法 Harmonization 條約締結을 서두르고 있는데 本稿에서는 WIPO 商標法 Harmonization에 관한 第2次 專門家會議結果를 中心으로 條約案과 우리 商標法과의 比較 및 主要 討議 內容을 說明하고 向後 會議展望 및 그 對應策 등에 대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II. 第2次 商標法 Harmonization 專門家會議概要

1. 會議名

Committee of Experts on the Harmonization of Law for the Protection of Marks ; Second Session

2. 日時 및 場所

- 일시 : '90. 6. 25~6. 29(5일간)
- (제1차 회의 : '89. 11. 27~12. 1, 5일간)
- 장소 : WIPO 회의실 (Swiss Geneva)

3. 目的

商標法 Harmonization 條約은 'Paris Convention'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特別協定形態로締結되며 이는 商標制度의 주요 사항을 多者間 國際條約에서 規定하고 締約國의 各國內商標法을 國際的 水準에서 통일화함으로써 外國人의 國內出願 및 內國人의 海外出願에 따르는 不便을 解消코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음.

본 제2차 전문가 회의는 제1차 회의시 論議된 內容을 基礎로 WIPO 사무국이 作成한 草案에 대한 各國의 立場과 意見을 收斂하여 豐后 외교회의에 上程할 條約案을 成案하기 위한 것임.

4. 加入對象(資格)

第1次 專門家會議時 討議된 바에 의하면 비록 파리協約에 加入하지 아니한 國家라도 파리

協約上의 商標關聯 義務條項을 받아들이는 條件으로 本 商標法 Harmonization 條約에 加入할 수 있도록 함.

5. 參加者

<40개국 74명, 26단체(기구) 29명, 총 103명>

- 정부대표 : 미국, 소련, 일본, 우리나라 등 35개국 67명
 - 읍서비 : 인도, 칠레, 에콰도르 등 5개국 7명
 - 정부간 기구 : 베네룩스 상표청 (BBM), 아프리카단결기구 (OAU) 등 2기구 2명
 - 비정부간 기구 : 베네룩스변리사회 (BMM), 일본특허협회 (JPA) 등 24단체 27명

6. 우리나라 參加代表

- 수석대표 : 이병균 항고심판관
- 대 표 : 김준규 주재판
- 대 표 : 이우권 상표심사관

7. 議長團 選出

- 의장 : Mr. Juan de Villafranca Andrade (멕시코)
- 부의장(2) : Mr. Rund Furstner(네덜란드)
Mrs. A Gorlenko(소련)
- 비서 : Mr. Ludwig Baeumer(WIPO)

III. 條約案과 우리商標法과의 比較 및 主要討議 內容

1. General observation

• 루마니아

루마니아 당국은 自國이 市場經濟體制로 나아가야 하는 趨勢에 處해 있음을 勘案할 때 본條約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觀點에서 루마니아 商標法을 改正할 것이며, 國際的 統一化의 結果는 이와 같은 目的과 關聯하여 考慮되어야 할 것임.

• 뉴질랜드

뉴질랜드 國內商標法은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WIPO에 의해 推進중인 商標法 Harmonization 作業은 매우 時宜適切하다고 봄.

2. 主要 條文과 우리 商標法과의 比較 및 討議內容

조약안	우리상표법	토의내용
<p>〈서문 : 목차규정〉</p> <p>○Article 2(정의)</p> <p>(1) Mark란 한 사업자(Enterprise)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그것들과 구별 시킬 수 있는 표지(Signs)로서 상표와 서비스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1)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p>	<p>○서독, EC, 포루투갈, 인도 등은 Mark와 Sign의 개념 구분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Article 101(등록될 수 있는 표지)와 관련하여 개념 혼동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함.</p> <p>○이에 대해 WIPO 사무국은 Mark와 Sign의 개념 정립은 어려우나 Mark는 Sign으로서 구성되며 일반적인 용어로 Sign은 인간이 인지할 수 있고 정보전달이 가능한 것을 뜻하며, 그 Sign이 Mark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자타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p> <p>○우리 법제는 사업자(Enterprise)의 범위에 자연인(Natural person)과 법인(Legal entity)이 포함된 개념임.</p>
<p>〈제1장 :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p> <p>○Article 101(등록될 수 있는 표지)</p> <p>(1) 형상적(graphically)으로 표시될 수 있는 표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단어(words) (성명 포함) ii) 문자(letters) 및 숫자 (numeralls) iii) 그림(pictures), 표상 (images) 및 도안 (designs) iv) 입체표장(Three-dimensional form : 상품의 형상, 그 포장 및 용기의 형상 포함) v) 색채(colors) vi) 소리(sounds) (악절을 포함 : including musical phrases) vii) 이들을 결합한 것 <p>(2) 기타 표지</p> <p>각 체약국은 형상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표지는 출원인이 그 표지의 설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될 수 있는 표지로 고려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p> <p>-기호(signs), 문자(letters), 도형(figure)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p> <p>〈외국의 입법례〉</p> <p>○미국 : 표지(signs), 단어(성명 포함), 문자, 숫자, 심볼, 도안(device), 색채, 상품의 외형(configuration of goods)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1091, 1127)</p> <p>○영국 : 단어, 성명, 문자, 숫자, 모양, 무늬, 포착 또는 이들의 결합(§ 68)</p> <p>○일본 : 기호(signs),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 2)</p> <p>○EC : 단어, 문자, 도안, 색채와 상품의 형상 및 그 포장의 형상</p>	<p>○다수의 옵서버기구 대표들은 Item(iii) 중 도안(designs)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으며 이는 "Industrial designs"과 혼동하기 쉽고 또 그림(pictures)과 표상(images)을 구별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이 3가지 단어 즉 "designs, pictures, images"를 하나의 단어로, 예컨대 "devices"(도안)이라는 말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표명함.</p> <p>○입체표장(Three-dimensional forms)은 상품의 형상과 그 포장 및 용기의 형상을 포함하며, 또 그런 형상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였다.</p> <p>○아국은 상거래 실정, 심사절차상의 어려움, 의장권 등과의 저촉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체표장은 채택하기 곤란함. 다만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자타 상품의 실별력을 가지는 한 앞으로 상표의 보호 범위로 취급하는 것이 발전적이며, 광의의 부정경쟁방지법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계속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표명함.</p> <p>—우리나라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시는 부정경쟁 행위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함(§ 2(1))</p> <p>○일본은 상표의 보호범위에 색채를 포함하는</p>

<notes : 주해>

○ Paragraph(1)은 상표등록의 적격요건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표지를 정의함

— 눈으로 볼 수 있게 종이에 표시될 수 있는 표지이어야 함. 예컨데, 빛과 같은 일련의 광학적인 신호는 등록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음.

— “represented graphically”라는 용어는 표지가 전자적 표시 (예 : TV screen)로 재생될 수 있는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다만, 그 표지가 종이 위에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

○ paragraph(1)의 List는 예시적인 것임.

○ Article 103(선권리와의 저촉)

(1) (등록된 표장과의 저촉) 선등록된 표장과 동일, 유사하고 그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공중을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된다.

(2) (주지, 저명 표장과의 저촉) 출원된 표지가 체약국 지역내에서 주지, 저명된 다른 사업자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공중을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된다.

(3) (등록되지 않고 사용된 표장과의 저촉) 출원상표가 체약국내에서 출원전부터 제3자에 의해 선의로 계속하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공중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절하는 규정을 들 수 있다(임의규정).

(7) (선권리자 동의의 효력) 제1항(선등록), 제2항(주지,

것에 동의하였으며

○ 인도는 소리표장은 오히려 저작권법 등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체코, 스페인 등은 소리표장은 상표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함.

— 우리나라 C M Song (commercial message) 을 저작권법상의 음반으로 취급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함. (§ 2(6), (7))

○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제1항 제9호 :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제1항 제10호 :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제8조 (선원)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유사한 상표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6호 (저명

○ 미국, EC 등은 동일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유사성과 동일성의 판단기준이 모호함으로 이를 구체화할 것을 요청함

○ 일본, 인도 등은 주지, 저명상표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WIPO 사무국은 파리협약 제6조와 본 조약안 Article 103(2)는 등록거절사유로서 저명상표의 사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저명상표는 소비자에게 잘알려져 있으면 족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광고에 의해 다수의 공중에게 알려진 상표를 뜻한다고 그 개념을 설명함

○ 아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단지 선사용 사실만으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는 것은 아국의 상표제도 운영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채택키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본 조항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용권(License) 설정에 관한 문제이지 상표등록 요

<p>저명), 제3항(선사용), 제4항(상호, 의장권 등)에서 규정된 선등록 권리와 저촉되더라도 선권리자가 그 표지의 등록을 동의할 경우에는 공중으로 하여금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거절된다.</p>	<p>한 타인의 상호) 제1항 제7호(선등록 상표)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주지, 저명 상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들 선권리자의 동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등록 거절됨. ○ 제53조(타인의 의장권 등과의 관계) 당해 상표출원전에 발생된 의장권 및 저작권에 저촉되더라도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나, 당해 의장권자 및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을 할 수 없다.</p>	<p>건에 관한 문제는 아님.</p>
<p>〈제2장 : 등록 및 출원절차 규정〉</p>	<p>○ Article 202(국제분류)</p>	<p>○ 상표법 제10조에 근거한 동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에 의거 한국분류 적용</p>
<p>(1) 국제분류 적용의 의무 공고 및 등록에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는 국제분류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한다(강행규정)</p>	<p>○ 제10조(1상표 1출원) 우리 상표법은 상품 및 서비스류가 다르며(이종상품) 동일상표라도 따로따로 출원하여야 한다.</p>	<p>○ 본 조항에 대해서 각국이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 아국은 국제분류의 적용의무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거나 그 시행시를 각국의 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함 - 아국은 구체분류 채택을 위하여 현재 검토 및 준비작업중에 있으며 '93년 이후에는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p>
<p>(2) (다수 유별에 속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단일출원 및 등록) 다수 류별에 속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단일출원 및 등록(다류일출원)으로 할 수 있다.</p>	<p>○ 일본은 1상표 1출원 및 다류일출원 제도의 적용은 각체약국 실정에 위임할 것을 주장함. ○ 프랑스는 다류일출원제도를 적용할 경우 1상표 1출원제도에 비해 출원료가 현저히 줄게 되므로 WIPO 사무국이 이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p>	<p>○ 우리의 경우 다류1출원제도를 채택하면 출원 및 등록자료(전산자료 포함) 관리상 및 심사실무상 문제가 예상됨.</p>
<p>○ Article 203(출원일)</p>	<p>(1) (요건) 출원서의 출원일은 다음 각호에 기재된 것이 포함된 공식언어로서 사무소에 접수된 날이된다.</p>	<p>○ 제1항(요건)에 관해서 스페인, 체코, 미국, 스위스 등은 조약안을 대체적으로 지지하고 출원일을 인정하는 요건중 등록을 받고자 하는 암시적 표시(implicit indication)는 명백한 표현이 아니고 그 개념이 모호하여 일본과 일부 음서버 기구들은 삭제를 주장하였으며,</p>
<p>i) 등록받고자 하는 암시적 또는 명시적 표시 ii) 출원인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한 표시 iii) 등록받고자 하는 표지의 견본 iv)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p>	<p>(1)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출원인 성명 및 주소(법인은 그 명칭, 영업소 및 대표자 성명) 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③ 상표</p>	<p>○ 미국은 출원일의 인정이 권리설정, 사용 등에 있어서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청함. ○ 출원시 공식언어 사용에 관해서는 미국 등 다수국은 각국의 언어의 차이(예: 중국어, 일본어 등)에 따른 번역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이</p>

<p>명 및 서비스명</p> <p>○Article 205 (등록요건으로서의 사용)</p> <p>출원인이 등록을 받고자 하는 표지에 대해 일정기간내에 진실된 사용사실 증거를 제출 토록 사무소(체약국 특허청)는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기 사용사실증거 제출 기간은 6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p>	<p>④ 지정상품 및 그 류구분 ⑤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 ⑥ 제출 년월일</p> <p>○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p>	<p>를 본 조약안에 고려할 것을 요청함.</p> <p>○ 미국은 본조항은 파리동맹국의 어느 1국에 등록한 상표는 사용 사실이 없이도 미국에 등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파리협약 제6조의5), 더욱이 미국대표는 등록요건으로서의 사용은 필리핀과 카나다의 법에도 있다고 피력하였음.</p> <p>○ 카나다는 출원전 사용이 카나다에서의 하나의 등록요건임을 피력하였음. 이것은 파리협약 제6조의 규정에도 위배되지 아니함.</p> <p>○ 여러나라 대표 및 읍서버들은 조약안 제205조의 포함을 반대했으며 그들은 출원인들이 출원전 사용사실증거를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국가에서 영업을 시작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증거를 제출해본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는 더욱 어렵다고 주장함. 또 등록상표의 불사용은 제재되어야 하지만 등록요건으로서의 사용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p> <p>○ 한 읍서버 조직의 대표는 미국에서의 상표등록 요건으로서의 사용요건은 심사후 등록사정통지가 보내지고 사용 사실 입증서 제출 기간이 출원후 3년의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확실성을 제공해 준다고 피력하였으며, ○ 3~4개 읍서버 조직의 대표들은 미국이 최근 상표법을 개정하여 출원전 실질적인 사용사실을 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용 의사를 가지면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음을 강조 했음.</p> <p>○ 아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전 사용사실 입증서 제출은 불필요하며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수국가를 위해 등 조항은 고려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p> <p>○ 일본은 실제 내용 심사 및 이의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그 처리 기한을 출원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등 그 처리기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는데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p> <p>○ 서독, 이태리, 영국, 소련 등은 조약안의 심사 처리 기한은 너무 짧으므로 각 체약국내의 심사관행, 출원건수, 심사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심사처리 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p> <p>○ 우리 상표법은 심사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p>
<p>○Article 207 (출원절차의 촉진)</p> <p>(1) 실제 내용 심사 및 이의 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처리.</p> <p>(2) 실제 내용 심사는 하지 않지만 이의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처리.</p> <p>(3) 실제 내용 심사는 하되</p>	<p>○ 우리 상표법은 심사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p> <p>— 현재 우리나라는 출원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소요</p>	<p>○ 일본은 실제 내용 심사 및 이의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그 처리 기한을 출원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등 그 처리기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는데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p> <p>○ 서독, 이태리, 영국, 소련 등은 조약안의 심사 처리 기한은 너무 짧으므로 각 체약국내의 심사관행, 출원건수, 심사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심사처리 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p> <p>○ 우리 상표법은 심사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p>

<p>이의 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8개월 이내 심사처리.</p> <p>(4) 실체 내용 심사 및 이의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출원 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심사 처리.</p> <p>○ Article 208 (출원 및 등록공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의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의 출원공고) (2) (등록의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사무소 (체약국 특허청)는 등록에 관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표시 또는 포함시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상표의 견본, 등록번호… <p>○ Article 209 (등록의 변경)</p> <p>등록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등록표장을 구성하는 표지 ii)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트 (단, 리스트를 감축하는 경우는 예외) 	<p>○ 제24조 (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원 공고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② 상표등록 출원에 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출원공고는 30일간이며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p> <p>○ 제16조 (출원인의 요지변경)</p> <p>다음의 경우는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삭제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p>○ 제4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지정상품의 동일류 구분 내의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p>	<p>지 않지만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다만, 이는 심사관수, 출원건수 및 전산 개발 수준과 연관시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약안의 심사 처리 기한은 너무 짧다고 생각됨.</p> <p>○ 동조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다수국이 동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대표는 paragraph(1)에 관하여 Madrid 협정 (상표국제등록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WIPO에 의해 국제상표공보에 게재된 상표는 각 체약국에서 재차 공고하는 것을 강제하는 의무 규정은 반대함. - WIPO 사무국은 이에 대해 paragraph(1)의 규정은 Madrid 협정에서 규정한 공고 절차 규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각 체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재공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또한 3~4명의 대표와 한 옵서버 대표는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WIPO에 의해 국제 상표 공고된 것은 각 체약국이 재차 등록 공고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함. - 이들 중 한 대표는 이의 신청 이후 그 상표가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에 대해 등록 공고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단지 그 상표가 등록된다는 것을 언급만 하면 된다고 표명함. ○ 우리 법제는 이의 신청을 받기 위한 출원공고제도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보정에 의해 출원 내용이 변화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므로 등록공고제도를 채택할 실익이 적음. ○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해 서독, 미국, 스페인, 인도 등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List를 상표권자가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 WIPO 사무국은 차기 Draft에 재고려 하겠다고 언급함. ○ 우리 법제는 지정상품 추가등록 제도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추가등록이 가능하며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상표 (표지)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가 가능함.
--	---	--

○ 제59조 (상표권의 포기) 상
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
정상품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

IV. 向後會議 展望 및 우리의 對應策

1. 向後會議 展望

다수국의 정부대표 및 옵서버기구(단체) 대표들은 WIPO 사무국이 提案하여 推進중인 본 商標法 統一化條約 締結을 원칙적으로 贊成하는 雾圍氣이며 특히 본 조약은 파리條約의 基本原則 태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파리條約 제19조의 特別協定 形態로 締結) 先進國과 開途國의 立場 差異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商標의 保護範圍(對象) 중 새로운 商標인 立體標章 (Three-dimensional forms), 色彩標章, 소리標章 등에 대해서 미국, EC,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은 이미 시행중에 있거나 그 시행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에 比하여 개도국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서 다소 異見調整이 必要할 것으로 보임.

審查處理期限을 一率的으로 定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국의 대표들이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각 개별국의 실정에 委任할 것을 要請함.

본 商標法 統一化에 관한 전문가 회의는 89년 제1차 회의에 이어 금년 제2차 회의에 지나지 않으나 特許法 統一化 條約案과는 달리 선 후진국간에 立場差異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3~4년 이내에 본 조약안이 成案될 것으로 展望됨.

2. 우리의 對應策

商標法 統一條約은 商標制度 運營에 관한 主要事項을 國際的으로 統一化 (Harmonization) 하여 외국인의 국내출원과 내국인의 해외출원의 不便을 解消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그 方法論에 있어서 核心이라 할 수 있는 商品分類의 NICE 분류 방식으로의 轉換義務를 우리가 큰

副作用 없이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이미樹立된 NICE 분류에 관한 基本計劃 ('93년 시행예정)대로 推進시켜야 하겠으며, 商標法 統一化條約案이 採擇하고 있는 立體標章 (Three-dimensional form), 色彩標章, 소리標章 등 소위 새로운 形態의 商標를 우리 商標法에 收容하기 위해서는 國內商去來 實定을 勘案하여 特許廳과 關聯業界 共同으로 研究·檢討가先行되어야 하겠고, 특히 企業의 商標管理 戰略 樹立時에도 이러한 趨勢에 副應하는 새로운 戰略이樹立되므로서 企業 및 商品의 海外市場에서의 이미지 (Image) 부각에 效果的으로 對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商標制度에 있어서 使用主義原則 즉 登錄要件으로서의 使用 또는 先使用者의 登錄 優先權이 본 條約案에 採擇되어 있음을勘案하여 使用主義原則을 우리 상표법에 加味하는 問題가 적극研究,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본 상표법 통일화를 위한 전문가회의에는 각국 정부대표 뿐만아니라 변리사회, 특히 협회, 각 산업분야별 단체 등 민간단체의 대표 다수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여 많은 발언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關聯團體에서도 본 전문가회의에 參席하는 등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商標制度의 國際的 새로운 움직임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同時에 企業의 商標制度 活用에 도움을 주는 契機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다.

結論的으로 우리나라는 輸出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수출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商標制度의 活用 問題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WIPO主管下에 推進되는 이 商標法 Harmonization 作業에 繼續해서 큰 關心을 가져야할 것이다. <♣>